소방안전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업체에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및 방염 대상 물품을 알아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방법에 대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1
1. 소방시설 4
1.1. 소방시설의 이해 4
1.1.1. 소방시설과 그 종류 4
2.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6
2.1. 건축물 6
2.1.1.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6
2.2. 건축허가 전 건축물 12
2.2.1.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12
3.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16
3.1. 소방시설 설치 16
3.1.1. 소방시설 설치방법 16
3.1.2.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17
3.2. 임시소방시설 설치 20
3.2.1.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20
3.3. 피난시설 등의 유지 22
3.3.1.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22
3.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23
3.4.1. 방염조치 대상 23
3.4.2. 방염 방법 26
3.5.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29
3.5.1.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29
4.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1
4.1. 소방안전관리의무 31
4.1.1. 소방안전관리업무 31
4.2.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32
4.2.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2
4.2.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36
4.2.3.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40
4.3.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42
4.3.1.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42
4.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43
4.4.1.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43
4.4.2. 우수 소방대상물 포상제도 48

1. 소방시설

1.1. 소방시설의 이해

1.1.1. 소방시설과 그 종류

“소방시설”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방시설의 중요성

▪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참조).

종류	세부종류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주거용·상업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 생략),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함),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참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종류	세부종류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

▪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참조).

2.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2.1. 건축물

2.1.1.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상가 √ 지하구 √ 국가유산 √ 복합건축물

※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개선조치명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 과태료

▹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위 화재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확인방법

Q.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있다는데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창에 시설명 등과 화재안전기준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등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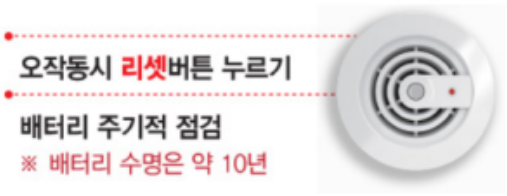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괸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 명)	
		

[사진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예시]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그림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6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 및 기준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소방설비 설치방법 및 구입방법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그림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 단독경보형감지가 및 소화기 구입방법: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화재피해 주민지원제도

Q.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화재 증명원	소방서	증명서 발급	민원인 요구 시	즉시
생활	소방서	화재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 PL법 관련 정보 제공		3~5일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즉시
		조의금 지급(30만원)		
	시·도, 시·도·구	구호물품 지급(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시·도·구 및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일
	E-아름다운재단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등		15일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7일
공무원 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부터 3년	보호신청: 20일 보상금: 7일 취업보호: 14일
국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기한만료 3일 전	3일(5일)
		징수유예	3일 전	7일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3일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고기한	즉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지방세	시·군·구 (세무·세정과)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발생일부터 30일	7일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납기종료 전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발생일부터 2년	즉시

기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 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 요구 시	즉시
	손해 보험사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지급, 가지급금지급		10일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20일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20일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즉시
	시·군·구 (재난관리과, 건설과)	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응급 7일 장기구호 1~6일
		풍수해 보험 신청	민원인 가입	4일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피해지원> 화재복구정보(www.nfds.go.k) 참조]

2.2. 건축허가 전 건축물

2.2.1.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받기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함)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함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6층 이상인 건축물

6.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8. 위 1.나.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9. 요양병원.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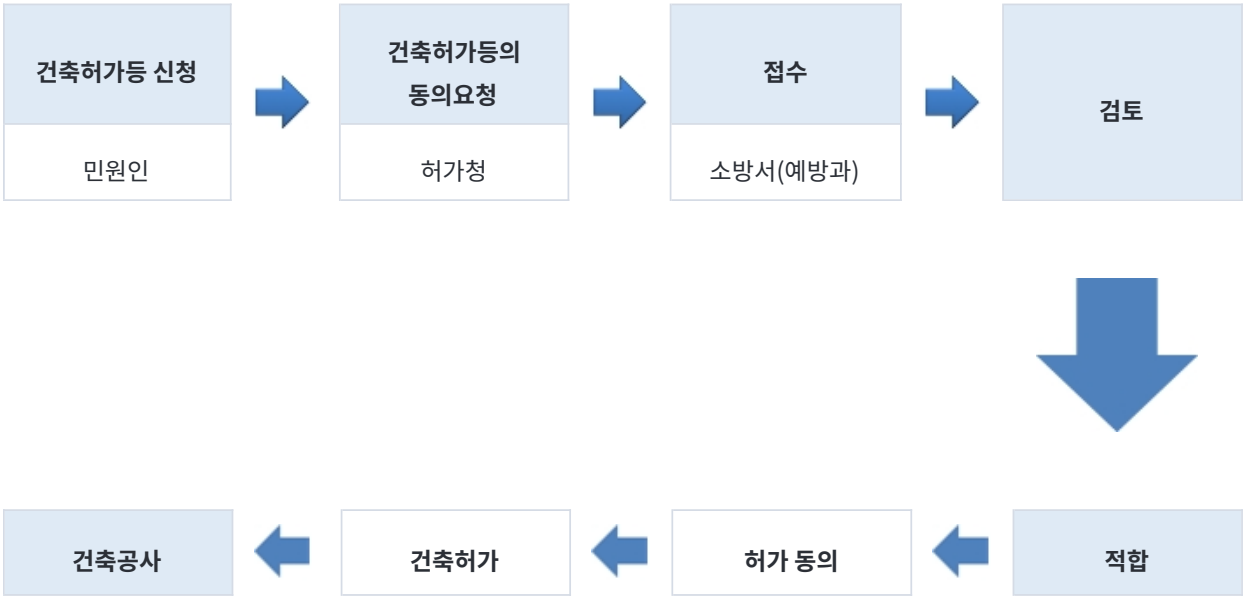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건축허가 동의절차(www.fire.seoul.go.kr) 참조]

제출서류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다음의 설계도서

√ 건축물 설계도서

√ 소방시설 설계도서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 사본 1부

동의방법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검사를 하였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참조).

3.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3.1. 소방시설 설치

3.1.1. 소방시설 설치방법

소방시설별 설치방법이 다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일정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기준

Q.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수련시설 총면적인가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란 수련시설 내 숙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서 수련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중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연면적 100㎡)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포함되나요?

A.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합숙소에 연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연수원은 학교 시설 외의 교육원에 포함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4)].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항시설, 다목적댐, 교량·터널, 수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함)은 제외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
  - √ 공항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다목)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6호)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 그 밖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2.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소방시설기준의 특별한 적용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소방시설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의 특정소방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참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원칙과 예외>

구분	원칙	예외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되기 전의 기준 적용	강화된 기준 적용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또는 60분+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 **※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적용기준**
>
> Q.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되나요?
>
> A.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5)

> ※ 위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구분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참조).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되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3.2. 임시소방시설 설치

3.2.1.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 및 제2호 참조).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공사의 종류 및 규모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함)에 설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및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위반 시 제재

▪ 개선조치명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임시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 과태료

▹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 ※ 위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피난시설 등의 유지

3.3.1.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항제3호 참조).

위반 시 제재

▪ 개선조치명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이 경우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위 개선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 과태료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 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3.4.1. 방염조치 대상

방염조치 의무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의무

▪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고).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고(「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방염 대상 시설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 방염 대상시설
>
> Q. 최근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방염의무 대상이 아닌가요?
>
> A.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참조).

방염대상물품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방염대상물품 여부

Q. 방염대상물품 중에 출입문, 문틀, 창문 및 창문틀도 포함되나요?

A. 문과 문틀은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물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Q.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처리 해야 하나요?

A. 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 그 밖에 소방시설 방염 관련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2. 방염 방법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방염성능기준」에 따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방염성능기준」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방염성능검사의 신청방법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처리기관
선처리물품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 1부 ▪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1부	
현장처리물품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 “선처리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물품을 말하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현장처리물품”이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을 말합니다(「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합격표시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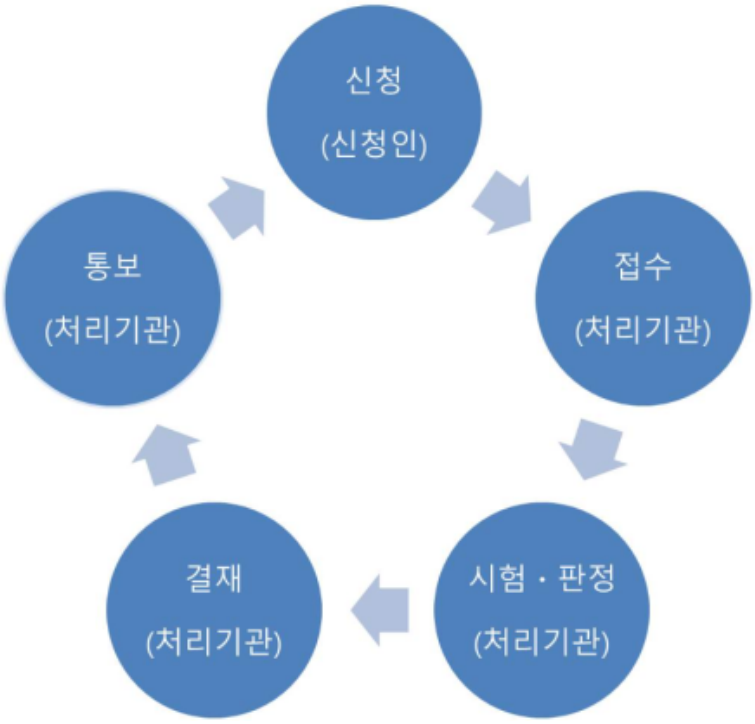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방염물품의 종류	표시 양식(단위: ㎜)
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표시 양식(단위: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위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3.5.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3.5.1.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신고 처리결과 통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및 별지 제35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Q.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말함)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참조).

Q.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있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의 경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산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참조).

4.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4.1. 소방안전관리의무

4.1.1.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X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참조).

> ※ 위 소방안전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4.2.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내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 민원안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참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기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구분	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⑤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⑦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전단).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함)

▪ 신고 방법

▹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신고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후단 및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전단 참조).

해임 통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 위 신고 및 게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주체

Q.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4.2.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참조).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최소 선임기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명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1명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참조).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강습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수료한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구분	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의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신고 방법

▹ 선임 신고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8호서식).

구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고 방법
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후단 및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참조).

▪ 선임증 발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7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해임 통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취지

Q.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별도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은 충실한 소방계획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소와 수용인원이 많고 소방시설이 복잡한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선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4.2.3.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함)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의 겸직 허용

▪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참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함)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참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 “산업단지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을 말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1항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

1.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2. 유치지역 및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의2)
3.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4.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5.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3.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4.3.1.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X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참조).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무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 ※ 위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위반, 그 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타목 및 파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받나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통보방법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4.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4.4.1.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자체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전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위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참조).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예외 있음)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점검자 자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장비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초고층 아파트의 종합점검

Q.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종합점검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나요?

A.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50층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해당)이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다목1).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자체점검 결과 따른 조치 및 보고

<점검 결과 제출 한 눈에 보기>

구분	내용
제출대상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제출 시기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제출처	온라인: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 오프라인: 관할 소방관서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보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년

중대위반사항의 조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전단).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제출

▪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부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보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4.4.2. 우수 소방대상물 포상제도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및 효과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상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 소방대상물 수상 효과

▪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제2항).